

##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

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2월 9일  
국 토 해 양 부 장 관  
대 한 건축 사 협 회 회 장

1. 응시자격	<p>가. 건축사예비시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li>2)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</li> <li>3)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</li> </ul> </li> </ul> <p>나.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사법 부칙(제3242호, 1980.1.4) 제2조(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○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(제9878호, 1980.5.26) 제2조(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li> </ul> <p><b>※ 주의사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,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됩니다.</li> <li>②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,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.</li> </ul>
2. 시험과목	<p>가. 건축사예비시험 : 건축계획, 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축법규 (객관식 선택형)</p> <p>나.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: 건축계획, 건축구조 (객관식 선택형)</p>
3. 시험일자 시험장소	<p>가. 시험일자 : 2011년 5월 15일(일)</p> <p>나. 시험시간 및 장소 : 2011년 4월 20일(수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</p>
4. 응시원서 접 수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.&gt;</b></p> <p>가. 기 간 : 2011. 3. 14 ~ 3. 21 (시작일 09:00부터, 평일(토·일포함) 00:00~24:00, 마감일 18:00까지)</p> <p>나. 방 법 :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kira.or.kr">http://www.kira.or.kr</a>)에 접속하여 접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“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”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</p> <p>다. 기 타 : 응시수수료(35,000원)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인터넷결제처리비용)이 소요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·도건축사협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</p>
5.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	<p>가. 합격예정자 발표 : 2011년 5월 27일(금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</p> <p>나.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: 2011. 6. 1 ~ 6. 3(09:00~18:00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.</p>
6. 응 시 자 지 참 물	<p>가. 응시표,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)</p> <p>나. 컴퓨터용 수성싸인펜</p>
7. 응 시 자 주의사항	<p>가.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(09:30)까지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시험시작 30분전(09:30)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</p> <p>나.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여타 국가인정증명서)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단,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(여타 국가인정증명서)을 지참하고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.</p> <p>다. 응시원서의 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·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·확인할 수 없습니다.</p> <p>라.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필기도구(연필, 네오펜 등)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,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시 별도 공고합니다.</p> <p>마.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신호와 시험종료신호로 이루어집니다.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.</p> <p>바.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,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</p> <p>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(02-2110-6210)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(02-3415-687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